

의 안 번 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23. . .

의 결 사 항

2023년도 구미시의회 회기 연장의 건

발의연월일	2023. . .
발 의 자	김정도 의원 외 1명

2023년도 구미시의회 회기 연장의 건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3. . .

발 의 자 : 김정도·김영태 의원(2명)

1. 제안이유

「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18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기 위하여, 「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 규정에 따라 보고에 필요한 회기 일수를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함.

※ 「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전부개정에 따라(2023. 5. 31.)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집행기관의 출석 보고 조항 신설

2. 내 용

가. 회기 연장

- 당 초 : 100일(임시회 7회/55일, 정례회 2회/45일)
- 변 경 : 102일(임시회 7회/57일, 정례회 2회/45일)

나. 회기운영 계획 변경(안)

구 분	회 기		회의 일수	본회의 일 수	주 요 안 건
임시회	제270회	당초	9. 6.(수) ~ 9.12.(화) 7	2	■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
		변경	9. 6.(수) ~ 9.14.(목) 9 (+2)	2	■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■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

3. 관련법령

가. 「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

나. 「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18조

관련법령

□ 「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연간 총 회의 일수)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

제18조(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)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